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0.	9. 29	규칙 제 240호
개정	2001.	4. 14	규칙 제 263호
	2002.	3. 21	규칙 제 299호
	2004.	2. 25	규칙 제 362호
	2005.	2. 11	규칙 제 402호
	2005.	10. 5	규칙 제 432호
	2007.	1. 31	규칙 제 532호
	2007.	12. 17	규칙 제 555호
	2009.	2. 17	규칙 제 574호
	2009.	9. 14	규칙 제 587호
	2009.	12. 29	규칙 제 597호
일부개정	2013.	12. 23	규칙 제 720호
일부개정	2014.	12. 15	규칙 제 774호
일부개정	2016.	12. 19	규칙 제 867호
전부개정	2019.	5. 9	규칙 제 96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1. 18	규칙 제 983호
일부개정	2020.	11. 24	규칙 제1016호
일부개정	2021.	10. 5	규칙 제1049호
일부개정	2022.	5. 30	규칙 제1077호
일부개정	2023.	11. 24	규칙 제11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18>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30>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8>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7.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0>

④ 용인시와 지도자 및 선수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용인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0>

제7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8>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병역의무 이행 직후인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을 말한다)의 경기실적, 지도자평가, 용인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1. 10. 5>

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1. 10. 5>

⑤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및 목표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5>

⑥ 지도자의 등급은 별표 4에 따른 등급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의 결정 또는 재계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신설 2021. 10. 5>

⑦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⑧ 시장은 등급조정에서 종목별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제9조 삭제 <2021. 10. 5>

제2장 보수 등

제10조(보수 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감독·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1조(단원의 보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2.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
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연가보상비 및 특별수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5. 30>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시와 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8>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경기성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5>

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채용 전 계약

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따른다.

제14조(일반훈련비)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일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 등)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지훈련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③ 15일 이상 장기 전지훈련시 감독 부서에서는 1회 이상 전지훈련지를 방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제16조(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0>

제17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합숙소) ①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0>

②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0>

③ 합숙소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0>

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 5. 30>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5. 30>

[제목개정 2022. 5. 30]

제19조(의료·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2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8>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시간 등) ① 단원의 근로시간은 제6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2. 5. 30>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0>

- ③ 지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 (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을 방송, 보도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 ⑤ 시장은 용인시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및 인터뷰 녹음 등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단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 ⑥ 단원은 TV·라디오 출연, 선수 초상 등의 사용 허락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0. 5>

[제목개정 2022. 5. 30]

- 제21조의2(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0]

- 제2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5. 30>

- 제23조(휴직) ① 단장은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⑤ 제4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휴직으로 한다. <신설 2021. 10. 5>

제24조(정년)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감독)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지도자(코치)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3.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까지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직권면직)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단원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25조의3(이적 동의) ① 시장은 용인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0]

제4장 상벌

제26조(표창)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① 삭제 <2019. 11. 18>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11. 18>

제28조(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30>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및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8, 단서신설 2021. 10. 5, 개정 2022. 5. 30>

1.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출전정지 및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계약될 수 없다.

부칙 <2019. 5. 9 규칙 제96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된 단원의 보수는 계약된 보수로 지급한다.

부칙 <2019. 11. 18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4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5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30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규칙 제1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1. 24>

종목 및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종 목	계	육 상	조 정	검 도	볼 링	유 도	태권도	씨름
총 계	68	9	12	10	8	8	8	13
감 독	8	2	1	1	1	1	1	1
코 치	2	1	1	-	-	-	-	-
선 수	58	6	10	9	7	7	7	12

< 비 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감 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코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경력이 3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용인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3] <개정 2023. 11. 24>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등급	총 점 (100점)	훈련평가(20점)			경기성적 (50점)	단장 및 지도자 평가 (20점)	용인시기여도(10점)		비고																																
			성실도 (10점)	이해도 (5점)	공헌도 (5점)			용인시 홍보 (5점)	재능기부 및 봉사 활동(5점)																																	
점수배정	-	100점	10점	5점	5점	50점	20점	5점	5점																																	
개 인 기 록 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p>○ 경기성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등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씨름)</td> <td>50점</td> <td>40점</td> <td>30점</td> <td>25점</td> <td rowspan="5">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td> </tr> <tr> <td>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체육대회(씨름)</td> <td>45점</td> <td>33점</td> <td>30점</td> <td>20점</td> </tr> <tr> <td>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td> <td>30점</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경기도체육대회(씨름)</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r> <td>경기도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td> <td>15점</td> <td>10점</td> <td>7점</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실업팀 수, 지원여건 등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상난이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10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록종목은 개인종목 최고기록 달성시 전국규모대회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인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재계약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우에는 등외점수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군입대로 해당년도의 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p>○ 단장 및 지도자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종목별 평균 점수가 14점을 초과 할 수 없다. <p>○ 용인시 기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행사는 생활체육·학교체육과 연계행사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용인시 홍보는 언론보도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p>※ 신규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60%)과 단장 및 지도자평가(4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p> <p>다만,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 국가채난 발생 등으로 대회개최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단원 연봉을 동결할 수 있으며, 신규단원은 최근 경기실적 3년을 인정할 수 있다.</p>											구분	1위	2위	3위	등외	비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씨름)	50점	40점	30점	25점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체육대회(씨름)	45점	33점	30점	20점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30점	25점	20점	1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경기도체육대회(씨름)	25점	20점	15점	10점	경기도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15점	10점	7점	
구분	1위	2위	3위	등외	비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씨름)	50점	40점	30점	25점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체육대회(씨름)	45점	33점	30점	20점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30점	25점	20점	1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경기도체육대회(씨름)	25점	20점	15점	10점																																						
경기도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15점	10점	7점																																							

[별표 4] <개정 2023. 11. 24>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특 급	1	2	3	4
등급기준		100~92	91~82	81~70	69~56	55점 이하
연봉액	감독	80,000~ 61,000	60,000~ 51,000	50,000~ 46,000	45,000~ 41,000	40,000~ 36,000
	코치	50,000~ 46,000	45,000~ 41,000	40,000~ 36,000	35,000~ 31,000	30,000~ 27,000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제11조 관련)

구 분	등급	순위	총점 (100점)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0점)	경력(10점)			단장 평가 (25점)	시정발전기여도 (홍보실적, 재능기부, 사회봉사 포함) (15점)
					10년 이상	5~10년 미만	5년 미만		
점수배정	-	-	100점	50점	10점	7점	5점	25점	15점
개인 기록표	000	1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1위 50점, 2위 46점, 3위 42점, 4위 38점, 5위 34점, 6위 3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구 분	1위	2위	3위	등외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씨름)	50점	40점	30점	25점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체육대회(씨름)	45점	33점	30점	20점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30점	25점	20점	1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경기도체육대회(씨름)	25점	20점	15점	10점
경기도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15점	10점	7점	-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선수관리(10점), 훈련일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1. 10. 5>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특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준 평점	100 ~ 98	97 ~ 95	94 ~ 92	91 ~ 89	88 ~ 86	85 ~ 83	82 ~ 80	79 ~ 77	76 ~ 74	73 ~ 71	70 ~ 68	67 ~ 65	64 ~ 62	61 ~ 59	58 이하
연봉액	69,000 ~ 100,000	66,000	63,000	60,000	57,000	54,000	51,000	48,000	45,000	42,000	39,000	36,000	33,000	30,000	27,000
<p>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p> <p>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p>															

[별표 6]

일반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원/일)

계	식비	목욕비	간식비	비고
34,000	24,000	5,000	5,00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개정 2020. 11. 2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국내 기준

(단위 : 원/일)

구분	계	숙박비	식비	목욕비	간식비	일비	교통비
금액	79,000	35,000	24,000	5,000	5,000	10,000	실비

2. 국외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3. 출전준비금

-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출전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 및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제대회 500,000원, 전국체육대회 300,000원

[별표 8] <개정 2023. 11. 24>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올 림 픽	30,000	20,000	1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 게임	10,000	5,000	3,000
전국체육대회	2,000	1,500	1,000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500	400	300

< 비 고 >

1. 소속팀 지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올림픽,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 게임에는 해당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2.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을 입상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전국체전 입상포상금은 기준의 70%만 지급한다.
4.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의 20%를 더하여 지급한다.
5.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4년을 기준으로 하고 2~3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70%를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50%를 지급한다.
7. 단, 국제대회가 없는 씨름 종목의 경우 민속씨름대회, 일반씨름대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민속씨름대회

(단위 천원)

구분	장사(1위)	1품(2위)	2품(3위)~3품(4위)	4품(5위)~7품(8위)
개인전	5,000	2,000	1,000	500
단체전	3,000	2,000	1,000	-

- 일반씨름대회

(단위 : 천원)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전국 대회	개인전	5,000	2,000	1,000	
	단체전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2,000	1,500	1,000	
경기도체육대회		1,000	500	300	종합순위

8.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9. 11. 18>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	해 고		정 직	감 봉
영 리 업 무 및 결 직 금 지 의 무 위 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	해 고		정 직	감 봉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제3조제3항 관련)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회의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5>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_____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이라 한다) _____ [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¹⁾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 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 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③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_____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6시간 40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 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급여의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1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19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제6조제2항 관련)

본인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금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7조제1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용인시청			
	직위·직급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7조제2항 관련)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급	직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연한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별 사항	포상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제15조제1항 관련)

팀			
대회명		주최/주관	
대회기간		대회장소	
출전기한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	성명	세부종목	예상성적	비고	

그 밖의 사항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

[별지 제8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제15조제1항 관련)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	--

작성일		작성 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	-----

[별지 제9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제15조제1항 관련)

대회개요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세부결과

성명	구분	결과	비고

분석 및 향후대책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	--	--	--

분석 및 문제점			
-------------	--	--	--

향후대책			
------	--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인)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제21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요일				주 장	코 치	감 독	결 재
훈련시간	장 소	훈 련 내 용				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5. 30>

이 적 동 의 서(제25조의3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이적사항	전	소속	용인시청	직급	직장운동경기부 (○○○팀)
	후	소속		직급	

위와 같이 단원의 이적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